

# 공시정보관리규정

2022. 2. 10.

코웨이주식회사

# 목 차

제1장 총 칙	7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7
제3조(용어의 정의)	7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9
제4조(대표이사)	9
제5조(공시책임자)	9
제6조(공시담당부서)	10
제7조(사업부서)	10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11
제1절 정기공시	11
제8조(정기공시)	11
제9조(사업부서)	11
제10조(공시담당부서)	11
제11조(공시책임자)	12
제12조(대표이사)	12
제13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2
제2절 수시공시	12
제14조(수시공시)	12
제15조(사업부서)	12
제16조(공시담당부서)	13
제17조(공시책임자)	13
제18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3
제3절 공정공시	13
제19조(공정공시)	13
제20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14
제21조(유의사항)	14

제22조(준용)	14
제4절 조회공시	14
제23조(조회공시)	14
제24조(공시담당부서)	14
제25조(준용)	15
제5절 자율공시	15
제26조(자율공시)	15
제27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5
제28조(준용)	16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16
제29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16
제30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16
제31조(준용)	16
<b>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b>	<b>16</b>
제32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16
제33조(의사소통)	17
<b>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b>	<b>17</b>
제34조(공시위험의 관리)	17
제35조(사업부서)	18
제36조(공시담당부서)	18
<b>제6장 모니터링</b>	<b>19</b>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19
제37조(일상적 모니터링)	19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19
제38조(주체 및 시기)	19
제39조(절차)	19
제40조(방법 및 고려사항)	19
제41조(평가결과의 활용)	20

<b>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b> .....	21
제42조(일반원칙) .....	21
제4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	22
제4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22
제45조(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	23
제4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23
<b>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b> .....	25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	25
제47조(보도자료의 배포) .....	25
제48조(의견청취) .....	25
제49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	25
제50조(언론사의 취재등) .....	25
제2절 시장풍문등 .....	26
제51조(시장풍문) .....	26
제52조(정보제공 요구) .....	26
제53조(기업설명회) .....	26
제54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27
, .....	
<b>제9장 보 칙</b> .....	28
제55조(교육) .....	28
제56조(벌칙) .....	28
제57조(규정의 개폐) .....	28
<b>부 칙</b> .....	28

# 공시정보관리규정

코웨이주식회사  
제정 2009. 9. 1.  
개정 2013. 7. 1.  
개정 2020. 8. 12.  
개정 2022. 2. 1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

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

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